송도 Luxe Ocean SK VIEW(송도 6,8공구 A9블록)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시 "자격요건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 분양대금 중 아파트 계약금 총 20% 준비된 자(최초 계약시 10% + 1개월(2022.10.21.) 이내 10%)

[단위 : 원]

타입	동·호수	아파트 분양가(계약금 20%)			발코니 확장비(계약금10%)		아파트 분양가 납부조건
		공급금액	2022.09.21(10%)	2022.10.21(10%)	공급금액	2022.09.21(10%)	
84A	101동 404호	862,000,000	86,200,000	86,200,000	35,109,000	3,510,900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
84F	101동 3705호	897,000,000	89,700,000	89,700,000	35,445,000	3,544,500	
97T	107동 401호	1,099,000,000	109,900,000	109,900,000	40,248,000	4,024,800	
104T	105동 203호	1,246,000,000	124,600,000	124,600,000	42,910,000	4,291,000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청약전 반드시 대표전화(1533-680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최근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 상실이 문제시 되고 있으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포기 시 청약제한기간 10년 적용됨.(투기과열지구)

■ 무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등본상 "인천시 거주자" 일 것.

■ 주민등록본상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일 것

■ 계약금 20% 납입 조건(계약 시 10% 일시납, 1개월 후 10% 추가 납부)

■ 잔여 공급 세대의 경우 "추가선택품목 선택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시스템에어컨 선택 계약 가능)

■ 본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9, BRC연구소 3동 606호로 이전 되었습니다.

■ **분양권전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송도 Luxe Ocean SK VIEW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송도 Luxe Ocean SK VIEW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http://sdsk.co.kr) 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08.(목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296**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목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022**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당첨자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

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간**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09월 13일(화요일)	09월 16일(금요일)	09월 19일(월요일)	09월 21일(수요일)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분양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9, BRC 연구소 3동 606호)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9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9층 7개동 총 1,114세대 중 잔여물량 4세대

■ 입주예정일 : 2025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주택	2022910296	01	084.9577A	84A	1	101	404
		02	084.9833F	84F	1	101	3705
		03	097.8381T	97T	1	107	401
		04	104.7358T	104T	1	105	203
합 계					4	-	-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577A	084.9833F	097.8381T	104.7358T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84A	84F	97T	104T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은 최초 모집공고문과 공급금액이 동일하며, 계약금 2회차 납부 일정이 2022.10.21.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2회차 납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최초 중도금 1회차 납부일(2022.08.16.)이 중도금 2회차 납부일(2023.03.15.)로 이월되었습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함]**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당첨자 공급자격 확인 제출**

-서류제출 일시 : 2022년 09월 19일(월요일)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O	해외체류(단신부임)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①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사실 증명	배우자 (외국인)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O		공통 서류 일체	당첨자	• 상기 공통 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의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의 동호추첨 및 계약에 앞서 사전서류접수를 통해 자격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서류제출 기한 내 견본주택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접수는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 및 부동산원에서 청약자격, 주택소유정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2년 09월 21일(수요일) [계약체결 장소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자격확인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포함)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부동산 분양계약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는 주택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 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을 포함 - 인지세 과세 기준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불가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 **[2022.09.08(목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납부 및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시 소인처리 하여야 합니다. 본 분양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정당계약자의 자격검증이 완료된 후 선정방식은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정당계약자의 자격검증 후 별도로 안내하는 일자에 동·호수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유지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무순위 청약 시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0.)**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dsk.co.kr)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9, BRC 연구소 3동 606호**

■ 분양문의 : **1533-6809**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나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